

정정보도문의 게재청구에 있어서의 기간의 확정

함부르크고등법원 1985. 3 19 결정
-3W28/85 사건-

적용법조

함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

판결요지

출판사에 대하여, 첫 번째 정정보도문의 게재요구를 바라는 의사표시에 게재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 대신 부당하게 임의의 게재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게재할 수 없는 정정보도문을 발송하였을 때 적법한 제 2의 문안을 후에 발송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인 「지체 없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결정이유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가 주장하는 함부르크주 언론법 제 11 조에 기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정정보도문이 지체 없이 송부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신청인은 후에 이르러 수정된 첫 번째 문안의 형식으로서, 정정보도문을 1985년 2월 8일에, 즉 원문기사가 게재된 수일 후에 출판사로 발송하였다. 이 문안은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신청인은 이를 수차에 걸쳐서 수정하였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세 번째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있어서 1985년 2월 8일에는 정정보도문의 유효한 도달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은 정정보도문이 그대로 게재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정정보도문이 유효하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당원의 판례를

고수하고 있다(Seitz-Schmidt-Schone, Der C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1980 Rdnr. 96 m. w. N. Löffler, Presserecht, Bd.I. 3. Aufl. , §11 LPG Rdnr. 148, m. w. N.은 반대견해임).

신청인은-관례에 반하여-피신청인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의사표시에서 기간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은 그 기간을 제한하였어야만 했던 것이다. 1985년 2월 11일자 및 1985년 2월 18일자의 「S」 잡지에는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1주일을 더 기다리기로 결심하였다. 1985년 2월 18일에 또다시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신청인은 출판사와 접촉을 개시하였으나, 1985년 2월 26일에 신청인의 게재청구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통지 받았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동 자체는 벌써 지체없는 피신청인의 행동을 요구하는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기사내용의 시사성을 확보하고 원문기사와 정정보도문과의 사이의 관련성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입법자의 분명한 의도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정정보도문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 수정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피해자측의 이익도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당원의 판례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관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지체없이 취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정보도문을 수차에 걸쳐 수정하거나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다. 즉 본건에 있어서는 정정보도문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나 또는 공정한 소추를 위한 준비가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정보도문은-비록 하자가 있는 것이기는 하였지만- 1985년 2월 8일에 벌써 그 문안이 확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출판사가 적당한 기간 내에 그 게재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게을리 하였던 것이다. 신청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정보도문이 그대로 게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출판사가 정정보도문이 도달되고 난 후 적절하게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해야 하도록 배려했어야 했던 것이다. 신청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전략은, 당초부터 지체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절차의 공정한 신속화를 보장하기에는 이미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정정보도문의 게재없이 두 번째로 출판된 1985년 2월 18일자 「S」 잡지의 간행 이후로는 신청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신청인은,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줌으로써, 좀더 빠른 시기에 출판사의 결단을 유도해 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지체없이」라고 하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련하여 신청인은 축제일(1985년 2월 8일은 Rosenmontag로서 휴일이었다)이라는 사실로부터도 그가 권리의 행사를 적절히 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도 없는 것이다.

신청인이 절차의 신속화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정보도문의 하자에 기인하는 「지체 없이」라는 요건에 관련하는 유효한 도달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한 위험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신청인은 1985년 2월 8일부터 1985년 2월 26일까지의 기간을 정해 주어 출판사가 분명한 의사표시 없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배려했어야 했던 것이었다.